

# [일본] 하늘을 나는 자동차, 플라잉카 전용보험 출시<sup>1)</sup>

- **[개요]**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은 「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」을 개발, 2024년 4월부터 판매를 개시

## 하늘을 나는 자동차, 플라잉카

정식 명칭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 (eVTOL, electric Vertical Take-off and Landing)로, 플라잉카, 항공택시 등으로도 불리며 항공기로 분류됨. 주요 특징은 ①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나 불필요 ②전동화, ③조종 자동화 목표 한계에 다다른 도심 교통체증의 대안으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의 핵심 인프라임



- **[배경]**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법제도 정비\*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함

\* 2018년 8월 「하늘길 이동혁명을 위한 관민협의회」 설치  
2018년 12월 「하늘길 이동혁명 로드맵」 수립  
2025년 이후 단계적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 중

1)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4.04.03.) 「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」

- 기체의 운항리스크 뿐 아니라 기체 제조 및 기지 관리에 관한 배상 책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음
- 이에 손보재팬은 플라잉카 프로젝트 참여사업자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폭넓게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시대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
- 정식 상품명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으로, 사업자들의 각종 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보상하는 상품임

[그림1] 손보재팬의 UAM 관련 보장 및 서비스



\* 출처: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4.04.03.) 「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」

## □ 상품 주요 내용

- (대상 업종) 기체, 부품, 기타 관련 기기 등의 제조/가공업체, 수리 업체, 판매/유통업체, 격납고 관리자, 이착륙장 운영업체 등

- 
- (대상 리스크) 제조/가공/정비/판매에 관련된 제조물 책임과 이착륙장 관리 운영에 관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상

\* 기체의 운항리스크 관련 보험은 2023년 2월부터 인수하고 있음

- 생산물 리스크: 기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조/수리/제공/판매/공급한 제품의 결과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애 및 재물 손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경우의 손해를 보상
- 시설 관리/업무수행리스크: 이착륙장 부지 안팎의 시설 사용 및 관리 또는 각종 업무수행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, 제3자에게 신체 손해 및 재물 손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경우의 손해를 보상
- 격납고 관리자 리스크: 격납고 또는 기체고정스팟에서 기체 보관/관리/정비 위탁업체가 일으킨 기체의 손괴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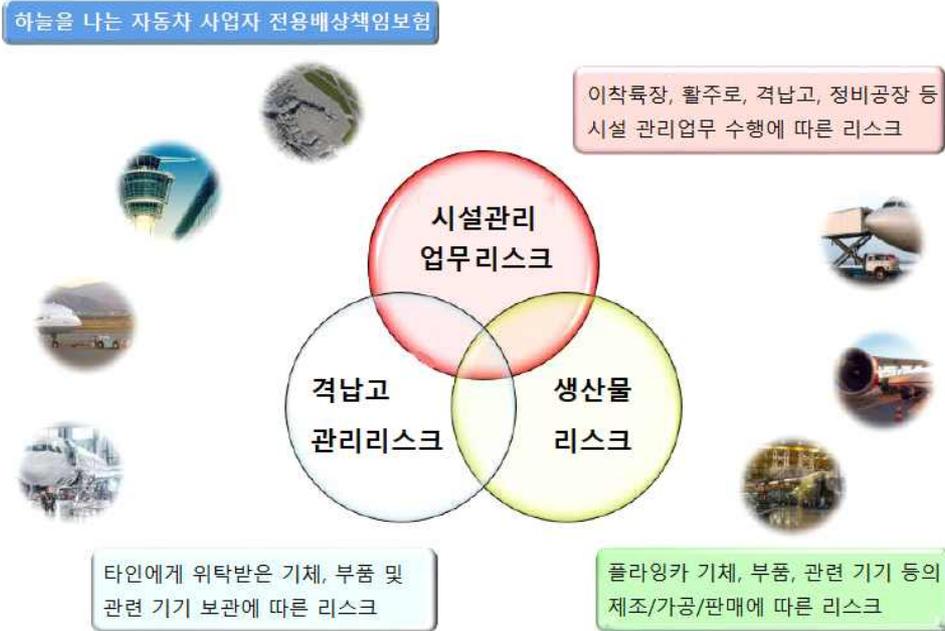
- (보상 금액) 손해보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함

- 손해보상금: 신체장애(치료비, 입원비, 위자료, 휴업보상 등)와 재물 손괴(수리비, 재조달비용 등)를 보상
- 소송비용: 소송/합의 등을 위해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 등
- 보험금 지급한도는 현재 10억엔 전후이나, 향후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

## □ 향후 계획

- 2030년대 연간 수입보험료 15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현 시점에서는 정교한 요율 산출에 필요한 통계량이 불충분하여, 파트너 기업과의 연계 및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향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나가겠다는 계획

[그림2]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



\* 출처: 손보재판 보도자료(2024.04.03.) 「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」

※ 동경해상의 '하늘을 나는 자동차 보험'

- 2019년 4월, 대형 손보사 동경해상은 플라잉카 시범 운행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최초로 출시한 바 있음
- 기존 '항공보험'을 바탕으로 제3자 배상책임(대인/대물) 보상하며 보상 적용범위를 비행중일 때 뿐 아니라 자동차로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까지 확대
- 기존 보험약관상의 '항공기'의 정의를 유인항공기 외에 무인항공기까지 확대